

징 계 양 정 기 준
(공금횡령, 부정청탁 등 관련)

(제43조 관련)

|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,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,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|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금횡령·유용 | 해고 | 해고 | 해고-정직 | 정직-감봉 |
|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| 해고 | 해고 | 정직-감봉 | 감봉-견책 |
| 부정청탁 | 해고 | 해고-정직 | 정직-감봉 | 견책 |